**세종대학교 학생회관 휴게실 대실 규약**

**제 1조 목적**

이 규약은 세종대학교 동아리연합회에서 휴게실 (학생회관 527호)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세종대학교 중앙동아리 한울림에게 휴게실에 대한 관리 권한 일임에 따른 휴게실의 관리 규약에 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1) ‘휴게실’ 이라 함은 학생회관 5층에 위치한 527호 공간을 말한다.

2) ‘대실신청서’란? 대실절차에 있어 한울림에게 제출해야하는 일련의 서류를 말한다. 양식은 동아리연합회 공식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한다.

**제 3조 대실신청 및 절차**

1) 세종대학교 소속 중앙동아리로 제한한다. 단, 특별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를 둔다.

2) 휴게실을 대실하고자 하는 동아리는 한울림에게 대실가능한 시간을 확인한 후 ‘대실신청서’를 작성하여 빌리는 날로부터 7일 이전에 한울림 동아리방(학생회관 514호)에 제출한다.

3) 한울림이 대실심의를 실시한다.

4) 한울림은 대실심의를 실시한 후 대실신청서를 사진으로 찍어 동아리연합회에게도 전달한다.

5) 심의를 마친 동아리에게 24시간(약 하루) 안에 유·무선으로 전달하도록 한다.

6) 한울림의 정기 연주회 3주전에는 (연 2회) 한울림이 대실 우선권한을 가진다. 그 외에는 심의를 거쳐 신청 순으로 대실해주도록 한다.

**제 4조 대실 및 관리의 의무, 책임 및 권한**

1) 과도한 소음을 일으키는 연습 및 취사 등 일반적으로 학생회관에서 금지된 활동을 대실의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는 대실을 금지한다.

2) 휴게실을 사용한 동아리는 휴게실의 상태를 사용 전과 같은 상태로 만들어놓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휴게실 사용은 오전 9시~오후 10시 까지 가능하며, 1회당 사용 시간은 최대 6시간으로 제한한다. 장기간 대여는 한울림과의 협의하에 가능하며 최대 7일로 제한한다.

4) 한울림은 대실을 승인함에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동아리 대표와 협의하여 대실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5) 대실은 타동아리에 양도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대실 날짜변경은 예약날짜의 3일전 까지만 가능하다.

6) 한울림에서는 휴게실을 언제든지 대실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7) 휴게실 비밀번호는 한울림이 맡아서 관리하도록 한다. 단 휴게실

9) 1달에 1회 (마지막날) 종합 휴게실 사용 결과 보고서를 동아리연합회 공식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다. 보고서 양식은 자유지만 날짜, 동아리, 대실목적이 적혀있어야 한다.

10) 한울림은 정기 연주회 1달 전에 정기 연주회 날짜를 공지해야 하며, 타동아리에 대한 휴게실 사용 제재를 원할시 동아리연합회에 제재승인요청을 할 수 있다.

11) 대실 승인에 관련하여 대실 신청이 거절된 경우 한울림에서는 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분쟁 발생시 제 7조 1항의 원칙을 우선으로 한다.

12) 휴게실 사용 중, 휴게실에서 일어난 사고는 전적으로 해당 시간에 대실한 동아리의 책임이며, 동아리연합회나 한울림에게 책임이 없다.

13) 한울림 또한 대실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하며 학생회관 이용규칙을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을 시, 동아리연합회가 회의를 통해 한울림에게 재량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 5조 제재**

1) 제재는 동아리연합회에서 하며, 동아리연합회 회칙과 중복 가능하다.

2) 휴게실 사용 시 문제가 발생한 동아리는 1년간 사용을 금지한다.

(위생상태 불량, 물건 파손, 휴게실 열쇠 파손 및 분실 등)

3) 무단으로 취소 2회이상시 1년간 휴게실 사용을 금지한다.

4) 그 외의 일에 대해서는 한울림과 동아리연합회가 회의를 통해 재량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5) 만일 청소상태가 불량할시 한울림은 이전 사용한 동아리에게 청소를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

**제 7조 분쟁 해결 및 관할 위원회**

1) 대실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한울림 대실 동아리는 서로의 합의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력하며, 분쟁에 대한 결정은 해당 동아리와 한울림의 회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2) 분쟁 해결은 1차적으로 한울림과 대실 동아리 간에 이루어지며, 해결되지 않을시 동아리연합회와 한울림, 대실동아리 간에 이루어진다.

**제 8조 규약 적용시기 및 효력**

1) 본 규약은 2015년 2월 12일 이후의 대실 계약부터 적용되며, 대실 계약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2) 본 규약은 해당관리 동아리와 동아리연합회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재조정을 하며, 재조정하기 이전까지 유효하다.

3) 본 규약은 연 단위로 관리권에 대하여 재논의하며 규약을 갱신한다.

**학생회관 휴게실 관리권 일임**

**학생회관 휴게실이라 함은 학생회관 5층 527호 공간을 말하며 2015년 2월 12일부터 동아리연합회가 휴게실에 대한 관리 및 권한을 한울림에 일임한다.**

**또한, 재조정이 필요할 시에 규약을 갱신하며 재조정 중 특별한 문제점이 나오지 않으면 “한울림”의 휴게실 관리권은 지속된다.**

**규약서 작성-2015.02.12.**

**일부조정-2015.03.03.**

**2021. . .**

**제39대 동아리연합회장 : 이 (인)**

**한울림회장 : (인)**